

2020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현황¹⁾

육아정책연구소 성과공유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3월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의 성격을 가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소책자는 ①임신·출산 ②양육·돌봄 ③시설·주거 ④교육·취업 ⑤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다.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주요 복지서비스로는 미혼모자 시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안내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국 500여 개 기관에 2만부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1.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 발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의 성격을 가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 공무원과 지역주민들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담았다. 특히,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도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이 없도

록 상세한 내용이 담긴 안내 소책자와 들고 다니기 편리한 책받침 형태의 요약본 등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소책자는 ①임신·출산 ②양육·돌봄 ③시설·주거 ④교육·취업 ⑤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고, 신청·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누리집 주소 등을 같이 담았다.

2. 한부모·조손가족 대상 주요 복지서비스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에

1) 본고는 여성가족부 보도참고자료(2020.3.30.) ‘한부모·조손가족에게 힘이 되는 정보, 한 곳에!’와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2020)의 ‘2020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함.

수록된 복지서비스들 중 한부모·조손가족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들의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임신·출산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하며 한부모를 위한 정책으로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 지원이 있다.

1)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지원대상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지원내용 숙식 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기본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미혼의 임신부 입소가능)〉

| 지역 | 시설명 | 전화번호 |
|----|----------|--------------|
| 서울 | 구세군두리홈 | 02-363-4471 |
| | 애란원 | 02-393-4725 |
| | 마음자리 | 02-2691-4365 |
| | 마포애란원 | 02-711-4725 |
| | 도담하우스 | 02-449-8893 |
| 부산 | 바인센터 | 02-2671-0693 |
| | 마리아모성원 | 051-253-7543 |
| 대구 | 성현원 | 051-545-9272 |
| | 가톨릭푸름터 | 053-764-8537 |
| 인천 | 인천자모원 | 032-772-0071 |
| 광주 | 인애복지원 | 062-651-8585 |
| 대전 | 대전자모원 | 042-934-6934 |
| 울산 | 미혼모의집물푸레 | 052-903-9200 |
| | 생명의집 | 031-334-7168 |
| | 새싹들의집 | 031-457-4383 |
| 경기 | 광명아우름 | 1600-0152 |
| | 마리아의집 | 033-262-4617 |
| 충남 | 구세군아름드리 | 041-568-0691 |
| 전남 | 성모의집 | 061-279-8004 |

| 지역 | 시설명 | 전화번호 |
|----|-----------|--------------|
| | 도담도담의집 | 061-684-0505 |
| 경남 | 생명터미혼모자의집 | 055-231-0582 |
| 제주 | 애서원 | 064-773-2010 |

나. 양육·돌봄

‘양육·돌봄’ 분야에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두었다. 한부모가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 가구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가족역량강화 지원 등이 있다.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 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 추가 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5.41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2020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
| 중위소득 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단위 : 원/월)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
| 중위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월 20만원)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 청소년한부모 교육비 실비(최대 500만원)

〈2020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
| 중위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 중위소득 72% | 2,154,226 | 2,786,815 | 3,419,405 | 4,051,995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3)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지원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3인 기준 2,902,933원 이하)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코로나19 위기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 3. 23. ~ 7. 31.)〉

- ①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 재산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기준 신설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
- ② 지원횟수 제한 폐지
 - 같은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가능하도록 개선
 -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

4) 미혼모부자 초기지원(거점기관)

지원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在家) 미혼모·부자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지원

〈전국 거점기관 안내〉

| 시도 | 사업수행기관명 | 전화번호 |
|----|-----------------------|---------------|
| 서울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02-861-3020 |
|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 02-704-4750 |
| 부산 |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 051-253-5235 |
| 대구 | 대구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3-355-8042 |
| 인천 | 인천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69-1546 |
| 광주 | 광주남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70-4204-6314 |
| 대전 |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2-932-9931 |
| 울산 | 물푸레 복지재단 | 052-229-3481 |
| 경기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01-0033 |
| 강원 | 재단법인 착한목자수녀회 | 033-264-3655 |
| 충북 | 청주새생명지원센터 | 1577-3053 |
| 충남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70-7733-8318 |
| 전북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3-231-0182 |
| 전남 | 여수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1-659-4171 |

| 시도 | 사업수행기관명 | 전화번호 |
|----|----------------------|--------------|
| 경북 | 칠곡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4-975-0831 |
| 경남 |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 055-243-0233 |
| 제주 |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4-725-8005 |

5) 가족역량강화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 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지원내용 사례관리, 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등 제공 및 긴급위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돌봄, 긴급심리·정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6)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지원내용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

7)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대상 임신부와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조손 가정 포함) 가정 등

지원내용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지원 영역별 서비스 제공

* 아동: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기초학력 검사, 언어치료, 독서지도,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임신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8)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 종일제 돌봄: 만 3~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

9)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조손가정 등으로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 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10)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원대상 2002. 1. 1. ~ 2009. 12. 31. 사이 출생한

만 11~18세 여성청소년(2020년 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1,000원, 연 최대 132,000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 2020년에 생성된 바우처 포인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11)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 학교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지원내용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도서·휴식 등 개인활동, 급·간식 지원

다. 시설·주거

‘시설·주거’ 분야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 공공주택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 가족, 조손가족)

지원내용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 시설유형 | 입소대상 | 입소기간 (연장) |
|---------------------|---|-----------|
| 기본생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3년(2년) |
| 모자가족 복지시설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 2년(1년) |
| 자립생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 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 3년(2년) |
| 기본생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3년(2년) |
| 부자가족 복지시설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 2년(1년) |
| 자립생활 지원 |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 - |
|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 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 1년(6월) |
| 3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2년(1년) |
| |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 2년(6월) |
| 일시지원복지시설 |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 6월(6월) |

2)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지원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자립 지원(6년 이내, 2년마다 자격심사하여 연장여부 결정)

3) 공공주택 지원

지원대상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 주택 유형 | | 순위 및 내용 |
|-------|---------------------------|---------------------------|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특별공급(1순위) |
| | 신혼희망타운주택* | 가점제로 우선공급 |
| 공공임대 | 영구임대 | 1순위 |
| | 국민임대 |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 부여 |
| | 행복주택 | 일반공급 대상(일반형), 1순위(산단근로자) |
| |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 특별공급(기관추천) |
| | 매입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 전세임대 | 청년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 | 청년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말함.

라. 교육·취업

‘교육·취업’ 분야에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자녀교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내용 등이 있다.

1)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대상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현황〉

| 지역 | 시설명 | 전화번호 |
|----|--------|--------------|
| 서울 | 나라대안학교 | 02-393-4720 |
| 부산 | 마리학교 | 051-253-7543 |

| 지역 | 시설명 | 전화번호 |
|--------|----------|--------------|
| 대구, 경북 | 가톨릭푸름터 | 053-764-8537 |
| 울산 | 미혼모의집물푸레 | 052-903-9200 |
| 인천 | 인천자모원 | 032-772-0071 |
| 광주 | 인애복지원 | 062-651-8585 |
| 대전, 세종 | 대전자모원 | 042-934-6934 |
| 경기 | 생명의집 | 031-334-7168 |
| 강원 | 마리아의집 | 033-264-0194 |
| 충북 | 청주해오름마을 | 043-285-4438 |
| | 구세군아름드리 | 041-568-0691 |
| 충남 | 천안새소망의집 | 041-568-0695 |
| 전북 | 민들레학교 | 063-283-1356 |
| 전남 | 성모의집 | 061-279-8004 |
| 경남 | 로뎀학교 | 055-292-4747 |
| 제주 | 무궁화아카데미 | 064-773-2010 |

2)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지원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만 18~6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한부모 등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최대 1년 동안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1단계 : 취업상담(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최대 25만원 참여수당 지급)
- 2단계 : 직업능력증진(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500만원의 훈련비 지급)
- 3단계 : 집중취업알선(취업시 최대 150만원 지급)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매월 5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구직촉진 수당 지급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4)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지급

| 구분 | 현행 | 개선 |
|---------|-------------------|--------------------|
| 첫 3개월 | 80% (상한 150만원) | 100%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50% (상한 120만원) | 80% (상한 150만원) |
| 7개월~종료일 | | 50% (상한 120만원) |

-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 간 1천 350만원을 받았다면, 3월 31일 이후에는 1천 650만원으로 3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 3월 31일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 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 '20. 2. 15.~'21. 2. 14. 동안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는 2개월째 육아휴직급여 중 3. 15.~3. 30.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3. 31.~4. 14.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마. 금융·법률 등

'금융·법률' 분야에는 한부모가족 법률적 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미소금융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9개월 간(최장 1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급받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19. 7. 1. 시행)
(개정 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 긴급지원 → (개정 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 해당 시 지원

※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 6. 25. 시행)
(개정 전) 양육비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회요청 → (개정 후) 집행권원 확보위해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회요청

2)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한부모가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구비 필요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지원 가능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민·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3) 소액보험

지원대상 한부모(조손)가족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지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전액 지원 (저소득층아동보험 등)

4) 청소년한부모 적금

지원대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로서 금융기관의 취약계층 우대적금 만기 해지자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가 시중은행의 한부모가족 우대 적금 만기 해지 시, 서민금융진흥원이 월 불입액 최대 10만원(연120만원)까지 1년치 이자분을 연 금리 2.0%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 추가 지급(단, 1인당 지원 한도는 24천원)

※ 은행권 취약계층 우대적금의 상품명 및 이율은 은행마다 상이함.

3.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 이용 안내

여성가족부는 안내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 개 기관에 2만부를 배포한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건강가정지원센터(<http://familynet.or.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에 연락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모든 국민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빠짐없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